

문서관리번호	HAMC-C08-1
최초 제정일	2025.07.22
최신 개정일	2025.07.22
문서 관리자	원가팀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2025.7

1. 제정 목적

본 행동규범은 당사의 모든 협력사가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갖추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한화첨단소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협력사 행동 규범

2.1 인권 및 노동

- 1)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2) 차별금지: 협력사는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3)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근로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비인도적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등을 금지한다.
- 5)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존중한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한다.

- 6)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근무시간을 보장한다.

2.2 안전 및 보건

- 1) 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한다.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3) 위험성 평가: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취약 근로자 관리: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고 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매뉴얼을 갖추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비상대피로, 유도 등,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6) 산업재해, 질병예방: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산업재해는 기록·보고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초과하여 근본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7) 유해인자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8) 기계, 기구, 설비안전: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9) 보건관리: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기숙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10)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2.3 환경

- 1) 환경법규준수 및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고 운영해야 한다.
-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4)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5)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4 기업윤리

- 1) 투명한 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사는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 관리해야 한다.
- 2)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3) 정보공개: 협력사는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공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4)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 5) 공정·투명거래 준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담합 및 반독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사는 정책 및 규정 위반 등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금지한다.

- 7)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8) 준법 및 윤리 경영: 협력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사는 임직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경영시스템

- 1) 경영진의 준수의지 선언과 책임 명확화: 협력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및 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한다.
- 2) 리스크와 점검: 협력사는 인권, 환경, 안전보건, 윤리 측면의 리스크를 상시 파악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 3) 리스크 사후관리: 협력사는 ESG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력사가 적절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 4) 교육 및 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내용을 구성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회사의 정책 및 성과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5) 문서 기록/관리: 협력사는 관련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6) 협력사의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정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가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를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4. 부칙

- 1) 본 협력사 행동 규범은 2025.07.22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